

제 974 호

1983. 7. 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공 보 관 김 영 근

전 화 :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훈 령

제 595 호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5

제 596 호 :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제소 운영규정..... 7

고 시

제 340 호 :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고시..... 13

제 341 호 : 서소문구역제 7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추가고시..... 14

제 34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7

제 34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8

제 34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22

< 이 면 제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45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23
제 346 호 : 천호제 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	23
제 34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시행허가.....	24
제 34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24
제 349 호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5
제 35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25
제 35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34
제 35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34
제 353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계획변경허가.....	35
제 35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36
제 355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7
제 356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38
제 357 호 : 도시계획 (도로)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38
제 35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50

공 고

제 38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51
제 382 호 : 장안평 구획정리사업 일부토지환자처분공고.....	53
제 384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54
제 38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54
제 386 호 : 도시계획사업 (광장,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55
제 387 호 : 도로공사계획 공고.....	56

예 규

제 438 호 : 안전사고기록보존규정 폐지규정.....	58
제 439 호 : 일제지령실운영규정폐지규정.....	58
제 440 호 : 대공업무성적평가요강폐지규정.....	58

사 령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제 595 호

서울특별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령안 입
법예고제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국
무총리 훈령에 의거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
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시민의 입법참
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
화를 기하고 자치법규(이하 “법
규”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여 시
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법규안 입법예고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법예고의 단계적 실시) 입
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는
시민의 권리, 의무 및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규안부터 단계적으
로 실시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되도록 한다.

제 3 조 (예고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조례·규칙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
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규안을 제안한
주관 실·과장(이하 “주관과장”
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도시계획
4. 건 축
5. 도로교통 및 지하철
6. 시험제도
7. 토지 기타 농지제도
8. 기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② 법무담당관은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규안으로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규안에 대한 심사요청 또
는 법규정비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 주
관과장에 대하여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 4 조 (예고의 예외) 예고사항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
가 곤란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예고함으로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5 조 (예고문 작성) ① 법규안의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후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예고문은 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별첨 예고안 작성예와 같이 법규안의 제명, 법규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 의견제출방법, 공개청문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예고방법) ① 예고문은 주관과장이 공보관에게 시보와 서울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 시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예고문을 게재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사본 1 부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규안의 주관과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된 협회·조합등의 단체 및 기관과 그 분야의 전문가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계기관과 협조) 법규안의 예고전에 중앙부처 또는 타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기본적인 입법방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고를 행하고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예고기간중에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절차가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8 조 (예고기간) 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 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조 (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법규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접수한 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

제 10 조 (의견의 분석·처리) 제출된 의견은 주관과장이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찬반사항을 종합·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법규점비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개청문) ① 법규안의 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개청문 (이

하 “공청”이라 한다)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고와 함께 공청의 일시·장소·공청사항·발언자 수·발언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청에서 발언할 자는 공청일전 또는 공청일에 선정하며, 발언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청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규안의 주관과장은 청문관이 되어 공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청문관은 공청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전에 공청사항, 발언순서 발언시간, 발언자간 질문, 발언자와 청문관간의 질문방법등 운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공청에 있어서 발언자는 공청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제 10조의 규정은 공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2조 (예고사항의 확장실시) ①제 3조의 예고사항으로 직접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정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입법을 위한 현실과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구청장, 직할기관의 장은 제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고안 작성예>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특별시○○○○○조례

(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 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제정 : ○○○○○조례 (규칙)안
2. 제정 (또는 개정·폐지)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1안)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조례(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제○○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필요한 경우 초안을 첨부(별첨)한다.
---	--

(2안)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취 지	비 고
가.(제○○조)				
나.(제○○조)				
다.(제○○조)				

* 필요한 경우 초안을 첨부(별첨)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2)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소: (가급적 시소유 시설물을 사용)

다. 공청사항

1)

2)

라. 발언자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단체에서의 직위를 기록)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제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훈령제 596 호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내무부 민방공 경보통제소 (이하 “중앙통제소”라 한다)로부터 발령되는 방공경보 (이하 “경보”라 한다)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각종 경보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방공 경보통제소 (이하 “통제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통제소는 년중 24시간 계속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앙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 (“훈련경보”를 포함한다)를 받아 시내 전역의 경보단말 (이하 “단말”이라 한다)에 전달, 경보발령
2. 통제소와 단말간의 유, 무선 통신망 유지관리와 단말점검 및 정비
3. 통제소 내외시설과 장비의 점검 및 정비
4. 중앙통제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5. 출입자 통제 및 보안유지
6. 기타 통제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소장등의 임무) ① 통제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내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근무조장 (이하 “조장”이라 한다)은 소장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조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보고체계) ①조장은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여 근무교대시에 소장에게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일주일 동안에 발생한 상황을 종합하여 주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유선보고 하여야 한다.

제 5 조 (경보발령시 조치등) 소장은 중앙통제소로부터 경보가 발령되면 소장 책임하에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즉시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의보 발령시

가. 근무요원의 정위치 배치여부 확인

나. 장비점검 및 경보발령 준비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경보 발령시

가. 시내전역에 지체없이 경보발령
나. 전단말의 정확한 작동 여부
확인

제 6 조 (운영) 통제소에는 행정반, 기술지원반, 운영반을 두며, 반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반

가. 문서 관인보관
나. 보안 및 경비업무
다. 통제소 시설물 유지관리
라. 장비구매
마. 직원교육 및 훈련에 관한사항
바. 기타 타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술 지원반

가. 경보장비 정비에 관한 사항
나. 장비구매에 필요한 설계작성
다. 난창지역 조사
라. 기타 경보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3. 운영반

가. 경보지령실 운영
나. 각종 경보장비의 점검

제 7 조 (교육 및 훈련등) ①소장은 일일 1 회이상 전직원에게 상황처리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 무선 경보장비 운영
2. 개별 장비운영
3. 발전기 운영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소장은 통제소 직원의 자질향상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시로 다음 각호의 교육 및 훈련의 실시를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국내 유관기관 파견 기술교육
2. 해외연수 기술교육 실시 및 외국 기술진 초빙교육
3. 국내 저명인사 초빙 점진교육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근무조 편성등) ①운영반 요원은 4 개 조로 편성하여 근무하되 근무조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경보지령실 근무와 경보장비 점검 업무를 상호교대하여 근무한다.

1. 경보지령실 근무조: 1개조가 24시간 근무(당일 09:00-일일 09:00)
2. 경보 장비 점검조: 2개조가 일일근무(09:00-18:00)

②당일 경보지령실 근무조는 30 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이상 유, 무를 점검하고, 별지 제 1 호 서식의 통제소 근무일지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상근무)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원을 비상 소집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앙통제소로부터 주의보 및 경보발령이 있을 때
2.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때
3. 시장의 지시가 있을때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②제 1 항에 의하여 비상소집 및 근무태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료하면 즉시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근무지 이탈금지) 전직원은 소장의 사전 승인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물품관리) 통제소의 물품출납은 통제소 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경보장비는 당일 조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제 12 조 (시설 및 장비의 점검등) 소장은 경보장비 및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통제소 및 단말의 시설과 장비

(제 1 호서식)

근 무 일 지

점검 : 월 2 회 이상 (별지제 2 호서식)

2. 통신시험 및 경보시험 : 일일 2 회 이상 (별지 제 1 호서식)

제 13 조 (기록의 유지등) 소장은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파관리법 제 45 조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 49 조 제 3 항에 의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무선업무일지 (별지제 3 호서식)

2. 출입자 명부 (별지제 4 호서식)

제 14 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반장	소장

19 년 월 일 근무자 : ㉠

	번호	직	위	성	명	날인	담당장비	번호	직	위	성	명	날인	담당장비	비번
근무자	1							8							
	2							9							
	3							10							
	4							11							
	5							12							
	6							13							
	7							14							

(제 2 호서식)

단 말 순 회 점 검 결 과 표

결 재	제	반장	소장

출장일시 : 198 . . . ~ 198 . . .

단 말 명 :

출 장 자 :

1. 자동화 장비동작상태

가. U.H.F 송 . 수신상태

나. MAIN CONTROL 상태

다. CONTROL BOX 상태

라. POWER SUPPLY 상태

2. 자동조작함 동작상태

3. 싸이렌 동작상태 (D.C 및 A.C)

4. 전용회선상태

5. 뱃데리 및 충전기 점검상태 (D.C 싸이렌)

6. 기 타

198 . . .

점검자 직급 :

성명

(인)

확인자 직급 :

성명

(인)

(제 3 호서식)

무 선 업 무 일 지

19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계	반장	과장
		전결	

1. 종사자

성명

자격

복무방법

2. 통신사항

통신시각		상대국 호출부호 (명칭)	전파의형식 및 주파수	공중선 전 력 (W)	통신사항 (경보및확인신 호송수신포함) 및 상대국 에서의 통지사항	통신사항별 통신시간	공전.혼선 수신감도 불량유무	비고
개시	종료		자국	상대국				

3. 기기고장사실과 원인 및 이에 관한 조치내용

4. 전파의 규정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과 조치내용

5. 조난, 긴급안전 또는 비상통신을 행한 사실 및 위규무선국 인지사실 및 조치내용

6. 기타 참고사항

(제 4 호서식)

출 입 자 명 부

구분 일시	방 문 자			용무또는면회자	면 회 시 간		비 고
	주 소	성 명	직 위		부 터	까 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40 호

도시계획법사업(고속철도)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 203 호(75.12.20) 및
건고 제 232 호(77.12.1)에 의하여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478 호
(78.9.15)로 지적 결정 고시된지
하철 2 호선 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
입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
시 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도시계획법시
행령제 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
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고시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건설 1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8.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남구방배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

방배구간

3. 사업규모 : 가) 폭 30 미터

나) 연장 L = 15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1983.12.31

6.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토지및건물조서 (추가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지		비 고
				주 소	성 명	
강남구방배동	190-12	대	417	방배동 190-1	사단법인청원사	
"	190-13	"	83	"	"	
"	192-9	전	90	"	"	
"	192-10	"	6	"	"	
"	산24-5	임대	21	"	"	
계			617 ㎡			

◎서울특별시고시제 341 호

서소문구역제7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추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36 호 (82.1.28)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고시된 서소문구
역 제 7 지구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
권리를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에 의거 추가
고시한다.

1983. 7. 8.

서울특별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
세 :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축물의병세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지 번	토 지 현 황		진 축 물 현 황			소 유 자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지 부	면 적 ㎡	용 도	구 조	면적(坪)			근저당권자	주 소
서 4 분 동	대 지	88.6	26.8		4.0	유원건설(주)	중구충무로 4 가 12-1	(주)제 일 은행	
58-16	"	67.4	20.4			(주)제 일 은행	중구충무로 1 가 53-1		
75-55	"	40.0	12.1			"	"		
75-53	"	41.0	12.4			"	"		
75-51	"	31.1	9.4			"	"		
75-50	"	763.6	231.0			"	"		
75-22	"	62.8	19.0			"	"		
75-42	"	150.7	45.6			"	"		
75-28	"	53.9	16.3			"	"		
75-84	"	95.2	28.8			"	"		
75-61	"	70.1	21.2			"	"		
75-62	"	107.4	32.5			"	"		
75-5	"	93.2	28.2	주택	26.0	토지 : 유 원	중구충무로 4 가 12-1		
75-6	"			복조와즙		전물 : 문병옥	마포구충동 221		

지 번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소유자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지목	면적 ㎡	평	용도	구 조	면적(㎡)			근저당권자	주소
시소문동	대지	61.8	18.7				(주)제일은행	중구충무로 1가 53-1	(주)제일은행	
75-29	"	80.7	24.4				"	"		
75-20	"	59.8	18.1				"	"		
75-31	"	198.3	60.0				"	"		
75-4	"	92.6	28.0	음식점	세멘트벽조	12.0	민재호	도봉구미아동 157-5		
75-84	"	13.2	4.0				신복성	구로구독산동 359-7		
75-82	"	17.5	5.3				김진형	중구서소문동 75-3		
75-35	"	12.6	3.8	음식점	세멘트벽조	45.5	김진형	"		
75-36	"	100.7	48.6		평 육 개		김진형	"		
75-81	"	10.9	3.3				김진형	"		
69-4	"	5.0	1.5				외환은행(주)	종로구관철동 10		
75-21	"	76.3	23.1				국유지	"		
75-73	"	191.0	57.8				서 울 시	"		
72-1	도로	6.3	1.9				국유지	"		
65-3	대지	11.2	3.4				"	"		
65-2	"	2.0	0.6				"	"		
65-4	"	17.0	5.1				"	"		
65-1	"	9.8	3.0				"	"		
68-2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42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54 호(83.3.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258 호(83.5.10)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53-3 외 1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53-3 외 1 필지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대광중학교 신설 확장 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토지(면적) : 32,866 m^2

○건물(면적)

기 존 [건축면적 : 5,829.02 m^2

연 면 적 17,138.61 m^2

증축예정 [건축면적 43.74 m^2

연 면 적 1,220.73 m^2

건물(규모) : 구조-철근콘크리트

층수 : 1~4 층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53-3

학교법인 대광학원이사장 한 경 작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 83. 7.30

○준공예정일 : 83.12.2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동대문구 신설동	53-3	대지	28,902	학교법인 대광학원	없음
"	397	"	3,964	"	"
계			32,866		

아. 허가설제도서 :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제 134 호 (83.3.9) 및 동고시 제 244 호 (83.4.29)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 금호3 가 1464-1345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동법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시행지 :

성동구금호동 3 가 1464-1345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연장 270 m 중 260 m 폭 6 m

콘크리트포장면적 13.8a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성동구자양동 220-147

성동구청장 이 원 중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수 - 83.7 준공 - 83.8.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소재지	지목	지적 m^2	소유권이외의권리
금호 3 가 1345-6	대	966	근저당 : 원호처(국), 중소기업은행 금호 3 가 1345 강태삼 " 209 홍등선 금호 1 가 105 위유환 동작구신대방동 366-9 이혜순 강동구성내동 421-14 김인숙
" 1362-58	임	5	
" 1460-1	대	1.3	
" 1461-1	대	5.5	
" 1462-1	대	3.3	

소 재 지	지 목	지 적 m^2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금호 3 가 1463-1	대	19.5	근저 당 : 국민은행
" 1464-1	"	27	
" 1465-3	"	42	
" 1465-4	"	6.4	
" 1466-1	"	35.6	
" 1469-1	"	15.2	
" 1470-1	"	17.9	
" 1492-2	"	5.2	
" 1493-1	"	9.8	
" 1494-3	"	5.4	
" 1495-1	"	2.3	
" 1496-1	"	20.8	
" 1498-3	"	6.9	
" 1499-1	"	13.6	
" 1500-1	"	21.2	
" 1501-1	"	27	
" 1502-1	"	21.9	
" 1505-1	"	22.1	
" 1507-1	"	14.4	
" 1509-4	"	2.2	
" 1397	"	61	
" 1397-1	도 로	100	
" 1504	"	380	
" 1450-1	"	31	
" 1506	"	30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 소 성명			
구 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관계인
토 지	금호 3 가	금호 3 가 1345 문상호	근저당 : 원호처(국), 중소기업은행

구 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관계인
	1345-6	외 108 인	금호 3 가 1345 강태 삼 " 209 홍등선 금호 1 가 105 위유환 동작구 신대방동 366-9 이혜순 강동구 성내동 421-14 김인숙
	1362-58	중구충무로 3 가 25 조성호	
	1460-1	금호 3 가 1460 박양언	
	1461-1	" 1461 정지화	
	1462-1	" 1462 최말녀	
	1463-1	" 1463 장인기	
	1464-1	금호 4 가 산 6 - 4 이정실	
	1465-3	금호 3 가 1465-1 임춘익	
	1465-4	" 1465-2 이태복	
	1466-1	" 1466 권대근	
	1469-1	" 1469 최복덕	
	1470-1	" 1470 이종규	
	1492-2	" 1491 박태식	
	1493-1	중구충무로 3 가 25 조성호	
	1494-3	금호 3 가 1499 이덕균	
	1495-1	서울시	
	1496-1	금호 3 가 1496 이남노	
	1498-3	" 1499 이탁균	
	1499-1	" 1499 "	

구 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과제인
	1500-1	금호 4 가 1418-6 김 덕 원	
	1501-1	" 1412 정 수 웅	
	1503-1	금호 3 가 1502 김 춘 길	
	1505-1	" 1559 권 기 옥	근저당 : (주)국 민 은 행
	1507-1	" 1507 김 창 복	
	1509-4	" 1509-1 김 영 채	
	1397	" 1397 정 광 채	
		" 1397 정 선 재	
	1397-1	서울시	
	1504	"	
	1450-1	"	
	1506	"	
건물	금호3가1464	금호동 4 가 산 6 - 4 이 정 실	
	" 1466	금호 3 가 1466 권대 군	
	" 1496	" 1496 이 남 노	
	" 1499	" 1583 이 덕 균	
	" 1500	" 1458 김 덕 원	

구 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관계인
	금호 3가1501	금호 4 가 1412 정 수 응	근저당(주)국민은행 (금호동지점) 중구남대문로 2가 9 - 1
	" 1505	금호 4 가 1559-2 권 기 옥	
	" 1507	금호 3 가 1507 김 창 복	
	" 1397	" 1397 정 광 채	
		" 정 선 재	

아.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445-8705) 로 문의함.

◎서울특별시고시제 34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 (81.7.4)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43 호 (82.2.1)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12.31)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7.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5-1

나.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서울외국인학교 교사 증축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1) 시행면적 : 54,800 m^2 중
1,532.53 m^2

2) 건물연면적 : 당초 (기허가)
12,817.78 m^2 변경 (증축분)

266.45 m^2 제 : 13,084.23 m^2

3) 건물층수 : 지상 1 층

4)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물용도 : 교사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50 번지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대표자 이사 사 로 덕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 1982.10.25

2) 준공예정년월일 : 1983.10.30

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수용할 토지 : 없음

아. 토지소유자 :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 서울특별시고시제 345 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
분 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공고제 189 호 (82.5.6)로 관리처분 계획 공람공고한 만리구역중 일부구획 (5.7, 10 구획)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동법 제 65조와, 동법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한다.

2. 동 고시내용은 토지 소유자등에게 개별 송달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고시로 갈음케 되며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 열람한다.

1983.7.9

서울특별시장

가. 명 칭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나. 위 치 : 중구만리동 200번지
일대 (만리구역 5.7, 10 구획)

다. 면 적 : 8,335 ㎡

라. 인가내역 : 생략 (개별통보문참조)

마.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346 호

「천호제 1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1. 건설부고시제 55 호 (81.2.2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383 호 (81.10.23)로 사업계획결정된 천호 제 1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천호제 1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

1983.7.11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인가내용

가. 인가목적 : 서울특별시 천호제 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재개발조합 설립

나. 조합명칭 : 천호제 1 구역 재개발조합

- 다.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면적
- 구역명 : 주택개량 재개발 천호제 1 구역
 - 위치 : 강동구천호동산 6-1 번지일대
 - 면적 : 31,733 m^2
-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강동구천호동산 6-1 번지
- 마. 설립인가년월일 : 83.7.11
- 바. 정관 : 별첨
- 사. 사업시행계획서 : 별첨

◎ 서울특별시고시제 34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8 호 (82.1.5) 및 동고시 제 58 호 (83.2.1)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월계동 824-3 번지의 열광학원내 운동장조성공사에 대하여 하수도 구조물이 변경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월계동 824-3
- 나.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 학교법인 열광 학원내 운동장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5,405 m^2 (1,635 평)

1) 변경전사업내역 :

하수관 (D= 600 ϕ) L= 180m

맨홀 4 개소 (원형)

2) 변경사업내역 :

하수관 (D= 600 ϕ) L= 7 m

U형 하수거 129m

각형맨홀 1 개소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학교법인 열광학원 이사장 이영순

마. 사업준공예정일 : 83.8.30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22 호 (83.4.16) 로 시설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 경	궁동국교	구로구온수동산 1-2 일대	19.500	

나.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7.14

서울특별시 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각 남구반포동 35-23
(주) 건영 대표 안경중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관악구신림동산 122 의 2
나. 면적 : 20,148 ㎡
다. 규모 : 아파트 12 층 3 동 492 세대
상 가 3 층 1 동 및 부대복
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3.7-84.11.30

◎ 서울특별시고시제 35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제 178 호 (78.4.26) 및 동고시 제 426 호 (78.8.23)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 행당동 12-5-사근동 199 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4

서울특별시 장

- 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행당동 12-5-사근동 199 번지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B:4-6m → 12m L:760m 하수시설 D:800mm L:680m 라. 사업의 시행자 주소성명 : 성동구자양 동 220-147 성동구청장 이위중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83.7 준공 - 8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에 권 리명세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 당 동 12-17	대	293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신설동지점)
12-18	대	15	
14-5	대	95	
12-19	대	92	
12-2	대	63	
11-4	학 교	284	
16-40	대	162	
16-41	대	67	
11-6	학 교	18	
사 근 동 223-19	"	91	
223-15	"	777	
309-159	대	20	
309-158	대	28	
309-157	대	9	
309-29	대	13	
309-30	대	5	
309-31	대	5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사 근 동 307-5	대	10	
307-28	대	29	
307-27	대	27	
308-10	대	27	
308-9	대	27	
223-14	학 교	18	
223-13	"	21	
308-8	대	11	
309-156	대	19	
309-155	대	59	
309-1	도 로	218	
309-51	"	63	
309-154	대	8	
301-37	도 로	235	
301-96	"	43	
301-33	대	3	
301-36	대	20	
301-101	대	13	
301-34	대	3	
301-35	대	26	지상 : 사근마을금고
223-12	학 교	418	
300-3	대	42	
300-2	대	114	근저당 : 국민은행 (성동지점)
299-1	대	118	
301-114	대	15	근저당, 지상 : 사근마을금고

소재지	지목	지적 (㎡)	소유권이외의권리
사근동 301-113	대	9	
301-112	"	9	
301-111	"	33	
297-3	"	8	
176-55	"	26	
176-54	"	7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
176-53	"	118	근저당 : 사근마을 금고
176-16	"	97	
176-15	"	122	
176-50	"	101	
176-49	"	47	
176-47	"	7	
176-48	"	39	
176-39	"	11	
176-40	"	2	
176-38	"	42	
210-29	"	13	근저당 : 제일은행 (울지로지점)
210-30	"	26	근저당 : 국민은행 (대림동지점)
210-31	"	11	
210-32	"	14	
210-33	"	76	
210-27	"	43	
210-34	"	140	근저당 : 농협 (성동지소)
209-6	"	28	
204-14	"	56	
204-7	"	215	
204-15	"	14	근저당 : 한일은행 (종로 6가지점)
204-16	"	207	
204-12	"	137	
204-10	"	116	

소재지	지목	지적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근동 204-18	대	39	
204-19	"	7	
200-7	전	265	
200-8	"	22	
행당동 16-46	도로	35	
309-65	대	3	
307-3	전	26	
307-4	"	20	
308-7	구거	413	
301-110	도로	53	
297-1	"	605	
210-26	"	327	
210-6	전	54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구분	위치	소유자	토지수용법제 4조 3항관계인
토지	행당동 12-17	서울시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신설동지점)
	12-18	"	
	14-5	"	
	12-19	한남동 765-16 오세경	
	12-2	"	
	11-4	미 등 기	
	16-40	신설동 76-34 이성열	
	16-41	서울시	
	11-6	미 등 기	
	사근동 223-19	행당동 17 한양학원	
	223-15	"	
	309-159	의주로 2가 27	
		조선연탄	

구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 관제인
토지	사근동 309-158	서울시	
	309-157	"	
	309-29	"	
	309-30	"	
	307-31	"	
	307-5	광주군 안주면 청담리 8 : 소림조지포	
	307-2	서울시	
	307-27	사근동 307 : 김인교 박순영, 김일수, 김경숙 사근동 176 : 김미자	
	308-10	사근동 308-5 : 이길상	
	308-9	사근동 308-4 : 최병완	
	223-14	행당동 17 : 한양학원	
	223-13	"	
	308-8	사근동 308 : 황광옥	
	309-156	서울시	
	309-155	"	
	309-1	종로구의주로 2가 27: 조선연탄	
	309-51	"	
	309-154	서울시	
	301-37	"	
	301-96	"	
	301-33	"	
	301-36	"	
	301-101	"	
	301-34	사근동 301-34 신순만	
	301-35	사근동 301-35 김인자	근저당, 지상 : 사근마을금고

구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관제인
토지	사근동 223-12	행 당동 17 한양학원	
	300-3	"	
	300-2	사근동 300 이복기	근저 당 : 국민은행 (성동지점)
	299-1	" 299 이종성	
	301-114	" 301 한덕순	근저 당, 지상 : 사근마을금고
	301-113	" 301-22 김판욱	
	301-112	서 울 시	
	301-111	"	
	297-3	"	
	176-55	사근동 298 남구경	
	176-54	" 176-45 김재호	근저 당 : 한국주택은행
	176-53	" 176-2 김옥자	근저 당 : 사근마을금고
	176-16	" 176-15 이완식	
	176-15	"	압류 : 서대문세무서장
	176-50	서 울 시	
	176-49	사근동 176-1	
		김용윤, 김창남	
	176-47	서 울 시	
	176-48	"	
	176-39	"	
	176-40	경기도광주군동부읍	
		덕풍리 403-17	
		조용준, 조은정, 조용관	
	176-38	서 울 시	
	210-29	사근동 210-19 전학용	근저 당 : 제일은행 (을지로지점)
	210-30	" 210-25 이병기	근저 당 : 국민은행 (대림동지점)
	210-31	서 울 시	
	210-32	사근동 210 이종환	
	210-33	" 214 "	
	210-27	서 울 시	

구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관계인
토지	사근동 210-34	사근동 210-1 김용규	근저 당 : 농협 (성동지소)
	209-6	" 209-3 김진철	
	204-14	" 204-4 이봉애	
	204-7	서 울 시	
	204-15	중구황학동 949 이창학	근저 당 : 한일은행 (종로 6 가지점) 압 류 : 성동구청 가등기 : 사근동 204-3 손정모 가등기 : 사근동 226 정용길 사근동 76-9 이덕재
	204-16	사근동 21-2 이순재	
	204-12	서 울 시	
	204-10	금호 3 가 1344-11 정원채	
	204-18	사근동 204-9 정옥배	
	204-19	서 울 시	
	200-7	사근동 214-2 이순재	
	"	" 186 정경환	
	"	" 169 정광희	
	200-8	" 214-2 이순재	
		" 186 정경환	
		" 169 정광희	
	행당동 16-46	서 울 시	
	사근동 309-65	"	
	307-3	"	
	307-4	"	
	308-7	"	
	301-110	"	
	297-1	"	
	210-26	"	
	210-6	"	
건물	행당동 12-5	행당동 12-5 미진무역 (주)	근저 당 : 한국외환은행 (을지로, 중부 지점)

구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관계인
건물	행 당동 16-12	마장동 385-5 김석봉	근저 당 : 동일 상가마을금고
	사근동 307-10	사근동 307-10 박일부	
	(307-25)	사근동 307 김인교	
	308-6	정순연, 김일수, 김경숙	
		사근동 176 김인자	
	308-5	" 308-5 이길상	
	308-4	" 308-4 최병완	
	301-36	" 309 인영국	
	309-51		
	300	" 300 이복기	근저 당 : 국민은행 (성동지점)
	299	" 299 이춘복	
	176-45	" 176-45 강제호	근저 당 : 한국주택은행
	176-2	" 176-2 김옥자	근저 당 : 사근마을금고
	176-15,16	" 176-15 이완식	
	176-15	" "	압류 : 서대문세무서장
	176-32	" 176-32 이한천	
	176-1	" 176-1 김용윤	
	210-19	" 210-19 전학용	근저 당 : 제일은행 (을지로지점)
	209-3	" 209-3 김진철	
	204-4	" 204-4 이봉애	
	204-7	강남학동 872-2, 영동 2지구 4호 소광진	근저 당 : 중소기업은행 (남대문지점)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가등기 : 강남구반포동 274-58 김명수
	204-12	성남시 신흥 2동 230-4 고형주	
	204-12	"	
	204-10	미 등 기	
	210-1	사근동 210-1 김용규	근저 당 : 농협 (성동지소)

아.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도시정비과 (445-8705) 로 문의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 35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18 호 (78.3.23) 로 허가되고 동 고시제 111 호 (79.3.9) 제 85 호 (80.3.4) 제 65 호 (81.3.10) 제 289 호 (81.8.3) 제 120 호 (83.2.28) 로 변경 시행허가 된 강남구 대치동 산 54 외 3 필지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1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1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강남구대치동산 54 외 3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다.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11,630 평

○ 건축면적 - 4,544.72 평

라. 사업시행자

용산구한남동산 8 - 3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박 정 숙

마. 사업기간

○ 착수년월일 - 81. 6. 26

○ 준공년월일 당초 : 83. 7. 31

변경 : 84.2.28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5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75 호 (75. 5.23) 로 도시계획 (학교) 시설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동고시제 59 호 (83. 2. 2) 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초동 1170-3 번지의 7 필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제 304 호 (83.6.9) 로 14 일간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6 조 1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1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170-3 번지의 7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다. 사업의 규모

구 분	기 준	금 회	총 계	비 고
대 지 면 적			43,603.86 m^2	
건 축 면 적	1,918.17 m^2	907.33 m^2	2,825.50 m^2	
건 축 연 면 적	7,356.58 m^2	3,944.08 m^2	11,300.66 m^2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170-4

학교법인 상문학원대표 이우자

마. 사업예정기간

○ 착수년월일 : 83. 7.

○ 준공예정일 : 8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사업시행 허가되고 동고시제 13 호

(83.1.11) 로 변경시행허가된 강남

구학동 998 구획 49 호외 4 필지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와 동법시행

령제 25 조 및 동 6 조에 의거 도

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계획변경허

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서울특별시고시제 353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계획변경허가

1983. 7. 14

1. 서울특별시고시제 430 호 (82.10.20) 로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당	초	변	경	비	고
강남구학동 998 구획 49호외 4필지	강남구논현동 111-14호외 4필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	변경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

다. 사업의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 지 면 적	928.4 m^2	928.4 m^2	변경없음
건 축 면 적	204.8 m^2	441.96 m^2	237.16 m^2 증
연 면 적	1,140.6 m^2	2,373.31 m^2	1,232.71 m^2 증

라. 사업 시행자		
당 초	변 경	비 고
강남구 청담동 산 67-2	강남구 논현동 240-10	82.10.21
진영건설(주) 김 익 춘	진영건설(주) 김 익 춘	본점 이전

마. 사업예정기간

- 당초 착공일 - 82.10.
- 당초준공 예정일 - 83.6.30.
- 변경준공 예정일 - 83.11.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인의 주소, 성명(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8 호(82.1.15)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된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 안암동 5 가
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고려대학교 시설확충

다. 사업시행 규모

1) 시행면적 : 582,326 평방미터

2) 사업변경

가) 기존

: 건축면적 - 38,482.04 평방미터

연 면 적 - 129,677.20 "

동 수 - 76 동

용 도 - 교사 및 부대시설

나) 변경후

: 건축면적 - 39,135.85 평방미터

연 면 적 - 147,023.76 "

동 수 - 69 동

용 도 - 교사 및 부대시설

다) 변경내용 (금회허가분)

○ 건축면적 - 2,026.40 m^2 (기존건물 1,372.59 m^2 포함)○ 연면적 - 18,719.15 m^2 (기존건물 1,372.59 m^2 포함)

○ 동수 - 1 동증축, 2 동신축, 9 동철거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동별층수 및 면적

- 과학도서관 (증축) : 지하 1층, 지상 2층 → 지하 1층, 지상 6층 (연 10,556.15 m^2 증)

- 정경대학 (신축) : 지하 1층, 지상 5층 (연 6,867 m^2)

- 사범대학 (신축) : 지상 3층, (연 1,296 m^2)

- 후문창고외 8 동 (철거) : 지상 1층 (연 1,372.59 m^2)

라. 사업시행자주소 : 성북구 안암동 5가 1

성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상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4.6.30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할 토지 : 별첨과 같음 (생략)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수용할 토지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355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5.

서울특별시장

○ 학교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m^2)	비 고
신 설	학교 (태강삼육국교)	도봉구 공능동 26-19	5,868	기존학교
"	" (한국삼육중, 고교)	"	13,210	"
변 경	" (삼육대학)	도봉구 공능동 26-20 일대	146,695	위치일부변경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6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229 호 (83.7.6)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따라 지적승

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세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학 교	마포구 신수동 1 - 1 일대	156,683	서강대학교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7 호

도시계획 (도로)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제 68 호 (83.2.4)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세도서는 종합건설본부, 중구청 및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 사업시행위치 : 장충체육관 - 신당동 - 금호동 - 옥수동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금호대로건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 도로폭 30-50 m
연장 2,886 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종합건설본부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84.12.31
- 6)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인 주소, 성명 : 별첨조서.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조서.

1983.7.15

서울특별시장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 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장충동 1 가 115-4	대		13.2㎡	주 택	장충동 1 가 장 충 교 회 115-4	
2	장충 2 가 200-91	"		17.5	"	장충동 2 가 정 정 대 200-91	
3	" 200-93	"		63.1	"	" 200-93 서 득 용	
4	" 200-94	"		53.8	"	시 유 지	
5	" 200-95	"		4.8	"	"	
6	신당동 821-14	"		20.0	"	신당 426-10 고 봉 화	
7	" 821-16	"		8.9	"	"	
8	" 426-37	"		30.0	"	427-37 김 홍 재	
9	" 426-38	"		17.0	"	426-3 석 명 근	
10	" 426-39	"		72.0	"	426-39 김 인 덕	
11	신 당 동 429-20	"		25.0	"	신당 426-39 김 인 덕 외 4 인	
12	" 421-32	"		11.0	"	을지로 5 가 대 현 실 업 20-1 (주)	
13	" 421-33	"		7.0	"	신당 421-15 손 현 수	
14	" 421-34	"		49.0	"	"	
15	" 421-35	"		23.0	"	421-3 문 동 술	
16	" 421-36	"		11.0	"	421-19 오 몽 식	
17	" 421-37	"		24.0	"	421-4 최 영 란	
18	" 421-38	"		31.0	"	아현동 2 가 김 명 진 181-34	
19	" 422-15	"		2.0	"	서 울 시	
20	" 422-16	"		24.0	"	신당 422-2 김 성 복	
21	" 422-17	"		52.0	"	신당 422-4 김 재 섭	
22	" 372-3217	"		40.0	"	신당 372-3217 조 경 숙	

59-40 제 974 호

시

보

1983.7.8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 이 용 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의 종류 및 내 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23	신 당 373-313	대		5.0 m ²	주택	신 당 373-106 김옥란	
24	373-471	"		22.0	"	" 351-182 양상서	
25	351-343	"		8.0	"	" 373 최연순	
26	351-344	"		1.0	"	" 351-191 함영화	
27	351-345	"		3.0	"	" "	
28	351-346	"		8.0	"	" 351-201 박형일 외 3 인	
29	351-347	"		5.0	"	" 373-93 송화섭	
30	351-349	"		2.0	"	종로구충신동55-11 이철재	
31	351-350	"		13.0	"	신 당 351-24 김순진	
32	351-352	"		17.0	"	" "	
33	351-353	"		6.0	"	금호 2 가 산 14 홍안선	
34	351-354	"		4.0	"	" "	
35	351-351	"		4.0	"	신 당 349-415 한영규	
36	351-256	"		75.0	"	" "	
37	349-415	"		80.0	"	" "	
38	349-414	"		76.0	"	" 351-27 이흥열	
39	309-265	"		74.0	"	" 309-265 정병국	
40	309-267	"		24.0	"	" "	
41	309-266	"		3.0	"	" 309-265 "	
42	349-486	"		98.0	"	" 349-238 서영돌	
43	349-463	"		72.0	"	" "	
44	349-481	"		36.0	"	" 309-75 이정자	
45	349-482	"		5.0	"	소 공동 45 대한추 택영단	
46	351-338	"		12.0	"	국 유 지	
47	349-480	"		4.0	"	신 당 349-262 김봉두	
48	349-478	"		65.0	"	" "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의 종류와 내 용
						관 세 인 주 소 성 명		
49	신당349-477	대		8.0 m^2	주 택	신 당	373-95 한후덕	
50	" 349-476	"		38.0	"	"	349-258 황구점	
51	" 349-474	"		23.0	"	이촌동	300-3 김성옥	
52	" 349-475	"		3.0	"	신 당	349-215 김재남	
53	" 349-473	"		107.0	"	"	349-213 최중일 외 1 인	
54	" 349-472	"		1.0	"	소공동 45	대한주 택영 단	
55	" 373-314	"		60.0	"	신 당	373-258 홍기주	
56	" 349-470	"		25.0	"	홍은동	396-27 신동철	
57	" 349-469	"		7.0	"	신 당	349-115 우재양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의 종류 및 내 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장충동 1 가 115	교회	철 근 평 옥	1 층	3.0	좌 등	장충교회	
				2 층	3.0	"	"	
				3 층	3.0	"	"	
2	장충 2 가 200-1	주택	연 조 평 옥	1 층	14.413	"	정정대	
				2 층	15.913	"	"	
				3 층	15.913	"	"	
				차 고	6.0	"	"	
3	장충 2 가 200-89,69	"	"	1 층	21.5	"	서득용	
				2 층	21.99	"	"	
				3 층	21.99	"	"	
				지 하	19.45	"	"	
	" 200-89	"	"	지 하	19.45	"	"	

59-42 제 974 호

시

보

1983.7.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실제이 용 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관 세 인 주 소 성 명		
4	신당426-14	주택	목 , 와	1 층	17.5	좌 동	석명근	
5	426-4	"	"	1 층	20.0	"	김인덕	
	"	"	"	2 층	20.0	"	"	
	"	창고		창고	1.55	"	"	
6	429-1	부속	시멘 골조	1 층	11.0	"	김인덕	
7	421-3	주택	목 , 와	1 층	6.00	을지로 5 가	대한실	
8	421-19	"	"	1 층	2.0	20-1	업 (주)	
9	422-2	시멘트와	1 층	무	무	421-15	손현수	
			2 층	무	무	"	"	
10	신당 422-4	주택	연와조평옥	1 층	무	422-4	김재섭	
				2 층	"	"	"	
11	372-23 6-6	"	목 , 와	1 층	19.80	좌 동	조경숙	
				2 층	13.0	"	"	
		영업	연와조평옥	1 층	8.25	"	"	
12	373-106	주택	목 , 와	1 층	15.0	373-106	김홍란	
13	351-256	"	"	1 층	14.6	349-415	한영규	
				지하	2.22	"	"	
14	349-414	"	목조세와	1 층	13.97	351-27	이흥렬	
15	309-128	"	인 , 와평옥	1 층	21.63	좌 동	정병국	
		"	연와조평옥	2 층	21.63	"	"	
				지하	10.50	"	"	
16	349- 9-238	"	흑벽돌와즙	1 층	15.0	349-238	서영돌	
17	349- 9-237	"	세 벽와즙	1 층	15.0	309-75	이정자	
18	349- 9-253	"	목조와즙	1 층	14.61	349-262	김봉두	
				2 층	3.55	"	"	
			세부스래트	차고	6.22	"	"	
19	349-213	"	세부와즙	1 층	7.4	이촌동 300-3	김성욱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관 세 인 주 소 성 명		
20	신 당 373-258	주택	연와조평옥	2 층	7.4	이촌동 300-3	김 성 욱	
			인와조평옥	1 층	8.0	373-258	홍 기 주	
				2 층	7.64	신당 373-258	"	
				지 하	4.56	"	"	
21	" 373-1	"	철근 평옥	4 층	23.7	홍은동 396-27	신 동철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 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의 종류 및 내 용
						관 세 인 주 소 성 명		
1	옥수동 377-14	대		16 m ²		옥수동 377-6	양 제 순	
2	" 371-2	"		11		" 371	경 전 등	
3	" 368-7	전		5		" 39	이 성 록	
4	" 411-2	"		14		" 395	미타사(월)	
5	" 408-2	대		10		" 산 5	김 기 준	
6	" 385-3	"		6		중구명동2가1번지	재단법인천 주교회재단	
7	" 384-4	"		8		옥수동 384	오 태 현	
8	" 377-13	"		4		" 377-5	최 재 근	
9	" 518-56	"		56.1		" 419-39	공 준 표	
10	" 518-57	"		14.5		" 329-34	백 윤 호	
11	" 518-58	"		125.8		금호 2 가 901	한 화 경	
12	" 518-60	"		9.5		옥수동 419-73	권 호 영	
13	" 517-48	"		1.8		" 419-26	유 희 균	
14	" 517-23	"		0.3		" 329-24	조 광 식	
15	" 517-51	"		0.6		" 419	김 제 형 외 1 인	
16	" 517-52	"		6.6		" 419-15	김 규 환	
17	" 517-53	"		6.5		" 321-8	위 보 환	
18	" 518-44	"		101.9		" 327-17	유 인 기	
19	" 2-350	도로		14		마포구노고산동54-3	송 두 섭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관 제 인 주 소 성 명		
20	옥수동 331-4	잡종지		295㎡		옥수동 211	김금복	
21	" 352	대		215		종로구연전동 203	유본청길	
22	금호 4 가 1333-3	"		33.1		동대문구제기동 36	김경국	
23	" 1333-5	"		24.4		"	김경국	
24	금호 3 가 1576-2	"		4.9		금호동 3 가 1576	백순복	
25	금호 4 가 1522-9	"		1.8		중구신당동 304-441	김영태	
26	금호 4 가 1522-13	"		5.1		"	"	
27	옥수동 321-4	"		85		옥수동 321-4	신승철	
28	금호 3 가 1650-2	"		8.1		금호 3 가 1650	김형식	
29	금호 3 가 1652-2	"		20		" 1652	김준식	
30	금호 3 가 1654-2	"		27.1		" 1654-1	구찬홍	
31	금호 3 가 1630-2	"		38.7		" 1630-1	강효식	
32	" 1622-1	"		12.4		" 1622	김정순	
33	" 1351-274	"		25		" 1351-201	김재옥	
34	" 1351-273	"		10		" 1351-197	이유성	
35	" 1351-196	"		80		" 1351-196	손양님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 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36	금호 3 가 1351-264	대		56		경 남삼천포읍도 285	장 석	
37	1596-1	"		76		금호 3 가 1596-1	송남일	
38	" - 2	"		17		"	장석기	
39	" - 5	"		6		" 1351-197	이유성	
40	" - 4	"		30		" 1596-1	송남일	
41	" 272	"		5		" 1351-181	조선봉	
42	" 271	"		82		"	이성현	
43	" 270	"		11		" 1351-180	이상희	
44	" 269	"		65		" 1351-140	이기숙	
45	" 268	"		3		"	"	
46	" 267	"		18		"	"	
47	" 266	"		15		"	정용선	
48	" 1536-2	"		11.9		" 1536-2	허영순	
49	" -5	"		114.7		" 1536	정제현	
50	" 1537	"		106.1		" 1537	라제술	
51	" 1538-1	"		40.2		옥수동 424-137	이화자	
52	" 1639-1	"		2.9		금호 3 가 1539	김진수	
53	" 1546-1	"		23.1		" 479	김광일	
54	" 1548-1	"		34.4		"	"	
55	" 1549-3	"		1.7		" 1549-1	이봉원	
56	" 1570-2	"		23.9		" 1570	최학정	
57	" 1572-2	"		44.2		충북괴산노수수도 1496	임청용	
58	" 1575-5	"		39.6		금호 3 가 1575-2	이종량	
59	" -6	"		14.9		" 1575-1	황양녀	
60	금호 4 가 1483-1	"		2.2		금호 4 가 1483	원기환	
61	" 1499-7	"		52.1		" 1499-1	박수자	
62	" 1500-16	"		49.6		옥수동 424-371	이정연	

일련 번호	소재지지면	지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내
						관 제 인 주 소 성 명		
63	금호 4 가 1500-18	대		44.7 m ²		금호 4 가 1500-7	이태열	
64	" -19	"		17.4		" 1500-3	부봉국	
65	" 1454-9	"		9.8		금호 3 가 603	최기섭	
66	" 1467-2	"		24.5		금호 4 가 1467	이방영	
67	" 1468-3	"		36.2		" 1468	조병일	
68	" 1466-1	"		3.4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무교동 12		
69	" -2	"		15.2		"	"	
70	" 1418-51	"		43.5		금호 4 가 1418-31	김대식	
71	" 1418-52	"		68.5		" 1411	박길일	
72	" -63	"		0.9		" 1418-30	김구진	
73	" -54	"		32.5		" 1418-18	양정환	
74	" -23	"		30.5		" 1418-23	박특원	
75	" -35	"		23.6		" 1418-35	송병기	
76	" -55	"		24.9		" 1418-33	임봉주	
77	" -56	"		19		"	"	
78	" -57	"		33.2		" 1418-17	김순종	
79	" -58	"		67.4		" 1418-5	이춘식	
80	" -59	"		69.2		"	"	
81	" 61	"		21.1		" 1418-12	오진애	
82	" 62	"		57.5		"	김명식	
83	" 1332-4	"		51.4		신문로 2 가 1-118	김성환	
84	" 1261-4	"		9.7		금호 4 가 1339	금강제화co	
85	" 1263-16	"		20.3		"	"	
86	" 1004-12	"		9.3		" 1004-3	이철규	
87	" 1329-17	"		571		" 1329-4	이문혜	
88	" 1329-19	"		11		일 본인	권오오람	
89	" -16	"		365		신설동 96-22	동익건설	
90	" 1321-7	"		37		신문로 2 가 1-118	김성환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편 입 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 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91	금호 4 가 1303-5	대		3 m ²		국 유 지	
92	" 1299-31	"		26		금호 4 가 1299-14 이명길	
93	" -33	"		10		" 243-28 성상화	
94	" -34	"		30		" "	
95	" -32	"		19		" 1299-6 김중성	
96	" 1264-8	"		26		" 243-28 성상화	
97	금호 3 가 1623-1	"		18.3		서 울 시	
98	" 1351-280	"		112		금호 3 가 1597 백판길	
99	" 1628-2	"		52.9		" 1626 유달현	
100	" 1629	"		36.5		" "	
101	" 1619	"		108.4		" 1619 안명희	
102	" 1620	"		59.2		" 1020 신석순	
103	" 1621-1	"		28.6		중구신당동 372-403 이 구	
104	" 1597	"		50.2		금호 3 가 1597 백판길	
105	" 1598	"		42.5		" 1598 김정옥	
106	" 1590	"		6.9		" 1590 구석기	
107	" 1547-1	"		30.6		" 1547-1 임학규	
108	" 1546-2	"		21		" 1546-2 송채갑	
109	금호 4 가 1329-18	"		99		금호 4 가 1329-4 이문혜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금호동 3 가 1575-1	주 택	세멘부력조 세멘와즙	1 층	28.6 m ²	금호동 3 가 1575-1 황영녀	
2	" 152	"	"	"	23	충북괴산군소수면수리 495 임청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제 인 주 소 성 명	
3	금호동 3 가 1570	주 택	목 조 세멘와즙	1 층	14.5㎡	금호동 3 가 1570	최학정
4	" 1351-131, 140	"	연와조 세멘와즙	1 "	44	" 1351-140	이기숙
5	" 1351-180	"	연와조 슬라브	2 "	36(1층18 2층18)	" 1351-180	이영조
6	" 1351-181	"	세멘벽돌조 슬라브	1 "	53.7	" 135-181	조선봉
7	"	"	세멘부력조 세멘와즙	1 "	7.3	"	이성현
8	" 1351-196	"	"	1 "	17.5	" 1351-196	이평호
9	"	"	연와조 세멘와즙	1 "	34	"	손양임
10	" 1596-1	"	목 조 세멘와즙	1 "	42.9	" 1596-1	송남일
11	금호동 4 가 1466	"	연와조 평옥개	1 "	9.5	기독교성결대한교회유지재단 무교동 12	
12	" 1418-31	"	"	1 "	22.6 [1층 16.6 지하 6	금호동 4 가 1418-31	김대식
13	" 1418-34	"	"	1 "	50.5	" 1418-34	박길일
14	" 1418-18	"	"	1 "	33.2	" 1418-18	양정환
15	" 1418-28, 33	"	"	1 "	27.8	" 1418-28, 33	강의환
16	" 1418-17	"	연와조 슬라브	2 "	53.3 (2층 26.5 1층 26.5 지하 0.7)	" 1418-17	김순중
17	" 1004-3	"	세멘부력조 세멘와즙	1 "	6.0	" 1004-3	이철규
18	금호동 4 가 1299-16	"	"	1 "	2.0	" 1299-16	김중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9	금호동 4 가 1329-1 외 9 필	주 택	철근콘크리 트, 연와조 및 평옥개 세멘와즙	2층	254 2층 84 1층 170	금호동 4 가 1329-4	이문래
20	" 1500-7	"	세멘부력조 세멘와즙	1층	14 0.5	" 1500-7	이태열
21	" 1500-5	"	목 조 세멘와즙 세멘부력조 평옥개	26 0.5	}	" 1500-5	이정연
22	" 1499-1	"	세멘부력조 세멘와즙	16		" 1499-1	박수자
23	" 1329-5	"	목조와즙	33.058		" 1329-4	이문사
24	" 1333-1	"	세멘부력조 세멘와즙	16.5	}	" 1333-1	김경국
25	" 1418-34	공 장	세멘벽돌조 철근콘크리 트평옥개	61.58		" 1418-5	이춘식
	" 1418-5	주 택	연와조스라 브, 위기와	36.68 지하		"	"
		"	"	62.41(1층) 27.42(2층)		"	"
26	금호 3 가 1628	"	세멘부력 세멘와즙	19.5		금 호 3 가 1626	유달현
27	금호 4 가 1329-4	"	목조와즙	33.75		금호 4 가 1329-4	이문래
28	옥수동 517-53	영 업	세멘벽돌조 슬라브조	2층	1.6 1층 0.5 2층 0.8	옥수동 321-8	귀보환
29	" 518-56	주 택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2층	73 1층 36.5 2층 36.5	" 329-35	공준표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30	옥수동 377-13	주택	연와조 세멘와즙	1층	1.5	옥수동 377-5	최재근
31	" 377-14	"	"	"	49.8	" 377-6	양발순
32	" 321-4	"	"	"	21.35	" 321-4	신승철
33	" 518-44	영업	철근콘크리 트슬라브	1층	56.2	" 327-17	위인기
				2층	56.2	" "	"
				3층이상	193	" "	"
				지하	56.2	" "	"
34	금호동 4가 1329 -10 2동 104호	주택	연와조경사 슬라브위기 와즙	1층	86.2 (1층 67.7 지하 18.5)	금호동 4가 1329-10	최광선
35	금호 4가 1329-10 2동 204호	"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5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제 225 호 (78.5.17) 및 건설부고시제 334 호 (82.9.20)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된 서대문구 신촌동 107-10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82.10.23)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신촌동 107-10 일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시설확충

다. 사업시행 규모 :

1) 부지면적 : 797,101 m^2

2) 사업변경

○ 당초 · 건축면적 : 61,641.2 m^2

○ 연면적 : 220,137.37 m^2

○ 동수 : 71 동

○ 용도 : 교사 및 부대시설

○ 변경 후 · 건축면적 : 61,756.76 m^2

○ 연면적 : 222,400.21 m^2

○ 동수 : 71 동

○ 용도 : 교사및부대시설

○ 변경내역 · 건축면적 : 115.56 m^2

○ 연면적 : 2,262.84 m^2

- 동수 : 2동 증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동별층수
 암센타 (증축) : 기존 5층
 증축 6.7층 (2개층 증축)
 (건축면적 증 : $63.96 m^2$,
 연면적 증 : $1,935.84 m^2$)
 승강기탑 (증축) : 기존 10층 ,
 옥탑 2층 , 증축 10층
 (건축면적 증 : $51.60 m^2$)
 연면적 증 : $327 m^2$)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마. 당해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1) 착수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3.12.30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할 토지 : 서대문구신촌동 107-10,
 131-5, 107-13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수용할 토지 없음)

자. 공사설제도서 : 별첨 (도면생략)

ㅇ 기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8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제 166 호 (80.5.16) 및

장 지 동 주 변 정 비 공 사

동 고시제 49 호 (74.4.20) 로 도시계
 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장지동
 주변정비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2 항 및 동
 법 시행령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
 에 공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
 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토목과

나. 공람기간 : 83.7.17-83.7.31

83. 7. 12.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략 개 요

1. 사업명 : 장지동주변정비공사

2. 사업시행지 : 강동구장지동

3. 사업규모 : 폭 : 10 m , 연 장 : 274 m

하수도 : $D = 600 \text{ mm}$

$L = 548 \text{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4.6.30

6.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및 문의바람
 (도면생략)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210-2	도	493.0	국	유 지
2	210-7	채	364.0	성 내	등

최상모
 조동환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3	211-4	도	132		국유지
4	211-6	도	126.0		미 등 기
5	217-6	도	724.0		"
6	216-1	도	231.0		"
7	215-2	도	182.0		"
8	263-4	도	344.0	은평구역촌동 42-57	박현 수
9	263-3	답	11,331.0	강남구학동 산 70-3	이 용 복
10	261-4	도	347.0	장지 동 195	김 준 동
11	260-10	"	79.0	장지 동 242	우 장 성
12	260-3	"	308.0	"	"
13	260-11	"	210	"	"
14	257-4	답	297.0	성북구자양동 139	손 회 복
15	260-13	대	96	성동구하왕십리동 242-130	이 원 명
16	260-14	"	184	장지 동 242	우 장 성
17	260-16	"	6	"	"
18	260-15	"	4	"	"
19	259-7	"	169	은평구역촌동 42-57	박현 수
20	261-3				

장 지 동 주 변 정 비 공 사

(지 장 물 조 서)

번 호	위 치	지장물명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장지 동 260-14	가 옥	성남시 창곡동 28	백 원 종
2	장지 동 210-7	"	성내동 46-17	최 상 모
3	장지 동 260-13	가 옥	성북구돈암동 51-32	조 동 한
4	장지 동 260-14	공 장	장지 동 260-13	이 한 영
			장지 동 242	김 순 분
			천호동 164 번지	최 순 용
			장지 동 242 번지	윤 동 우
5	장지 동 260-14		장지 동 260	백 충 기

◎서울특별시공고제 382 호

장안평구획정리사업일부 토지환지처분공고

1. 당시가 '76.6.25, '76.11.20 일 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얻 어 사업시행한 장안평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잔여 토지에 대 한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에 의하여 공고하며,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 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 음한다.

1983.7.13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명 :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환지처분위치 : 동대문구장안동, 성 동구군자동 일부
다. 환지처분면적 : 9,659 m^2
(2,921.9평)
라. 관계도서의 열람
1) 환지처분내용 : 지번, 지목, 지

적증감에 대한 관계 도면은 당 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2) 청산금 : 당시 도시계획국 구 획정리과

마. 공부정리 :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 지처분내용에 의하여 변경되었으 므로 동변경된 내용은 당시에 서 공부를 정리할 것이나 징수청산 금 납부대상토지는 청산금 납부 측시 정리되며, 체비지 소유자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이전 등기 절차를 취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선 청서(소정양식) 체비지 계약서 및 명의변경승인서,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1부,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바. 청산금의 징수교부 : 청산금의 징 수 및 교부대상의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공고후 별도 통보할 것 이나 징수청산금은 통보 이전이라 도 납입가능함.

사. 금회 처분보류한 일부토지

(5,341 m^2)는 추후 별도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임.

◎서울특별시공고제 384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8 호
및 국세징수법 제 7 조 제 4 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 업체의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3.7.12

서울특별시장

다 음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근거법규
서울 02-130	동일건설 (주)	하호남	동대문구신설동 103-6	83.7.12	국세채납	건설업법제 38 - 1
" 11-14						-18 및 국세징수법 7-4
" 12-34						
" 05-154	방우진흥 (주)	최정택	중구오장동 90-4	"	"	"
" 03-46						

◎서울특별시공고제 38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
도) 실시계획공람공고

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 83.7.18 ~ 83.7.31

1983. 7.14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1. 건설부 고시 제 82 호 (72.11.6)로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실시인가되고 서울시 고시 제 280 호 (80.8.1) 및 서울시 고시 제 402 호 (80.12.5)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지적고시된 천동국교주변 보도브릭 포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1. 사업명 : 천동국교주변 보도브릭포설공사
2. 사업시행지 : 강동구천호동및길동지내
3. 사업규모 : B = 3m L = 1,400m
보도브릭 35a 하수도 (D = 600mm)
L = 7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 - 84.6.30
6. 기타사항 :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공람장소에 제출 및 문의바람.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천호동	121-21	임	9 m^2	강남구논현동 211-17 노진철	
"	121-109	"	93 m^2	성동구광장동 362 위커일아파트 정우택 53-902	
"	121-119	"	107 m^2	용산구도동 1 가 8-30 정소진	
"	121-120	"	137 m^2	" "	
"	122-19	"	214 m^2	은평구불광동 331-52 임희수 외 1 인	

◎서울특별시 공고제 386 호

도시계획사업(광장,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37 호 (77.7.9) 및 서울시 고시 제 318 호 (77.9.1) 제 653 호 (78.12.14) 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도시계획시설(광장) 지적 고시된 길동 사거리 가각정비공사의 도시계획사업(광장, 도로) 실시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한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 한다.

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토목과

나. 공람기간 : 83.7.18-83.7.31

1983. 7.14

서울특별시장

공 란 개 요

1. 사업명 : 길동사거리 가각정비공사
2. 사업시행지 : 강동구성내동및 길동지내
3. 사업규모 : 폭 13m 연장 55m
포장 2.7a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일및준공예정일 : 인가일 -84.6.30
6. 기타사항 :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공람 장소에 제출및 문의바람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주소성명	비 고
				관계인주소성명	
성 내 동	379-42	대	26.4㎡	종로구운니동 97 이 궁 임	
"	379-41	"	280.8	서 울 시	
"	379-40	"	145	"	
"	379-39	"	22.2	"	
길 동	429-1	"	75.6	"	
"	428-1	"	225	"	
"	427-1	"	171.5	"	
"	426-1	"	6.3	종로구계동 143 이 훈	

건 물 조 서						
연번	소 재 지	종 류	구 조	수 량	소 유 자	비 고
1	길동 427-1	건 물	연와조	49.5 ㎡	충북괴산군괴산면대사리 111 이 태 훈	주 택
2	성내동 397-41	"	스라브	93.5 ㎡	종로구운니동 97 이 궁 임	"

◎서울특별시공고제 387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시행령 제 25 조 3 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17 조 2 항에 의

가. 도로공사 계획내역

거 아래와 같이 도로공사 계획을 공고한다.

2. 관련조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열람케 한다.

1983.7.14

서울특별시장

노 선 별	공 사 명	공 사 시 행 구 간	시 행 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한강로 3 가 65 도로정비공사	한강로 3 가 159-193	용산구청	83.8 ~ 9

노 선 별	공 사 명	공사 시행 구 간	시 행 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한남동 32 지내도로정비 공사	한남동 32 번지일대	용 산구청	83.8-9
"	한남동 657, 766 및 보광 동 265 주변도로정비공사	한남동 657-92-140 외 2 개소	"	"
"	동자동 24, 25 일대도로 정비공사	동자동 24-2 -갈월 동 6-20 외 1 개소	"	"
"	보광동 3-276 일대도로 정비공사	보광동 3-276 -한남 동 620	"	"
"	한강 2 동 3 각교회 진입 로포장공사	한강로 1 가 303-2 -22	"	"
"	산천동 56-35 - 82- 24 간의 1 개소도로확장 및정비공사	산천동 56-35 -82- 24 외 1 개소	"	"
"	한남동 729 주변의 1 개 소하수도개 량공사	한남동 729-24 - 729-37	"	"
"	이태원 2 동 212-29 - 212-46 간하수도공사	이태원 2 동 212-29 - 212-46	"	"
"	후암동 353-358 주변 하수도공사	후암동 358-25 - 358-60	"	"
"	청파 1 가 84-97 간하수 도공사	청파 1 가 84-2 - 97-13	"	"
"	동자동 18, 35 일대하수 도공사	동자동 35-85 - 35 -146	"	"
"	용문동 28, 29, 32 일대 하수도공사	용문동 29-2 - 32- 24	"	"
"	이태원 2 동 251 지내 하수도공사	이태원 2 동 251-15 - 251-37	"	"
"	한남 2 동 732 지내외 1 개소하수도공사	한남 2 동 732-101 - 732-157	"	"
"	이태원 1 동 72 일대하 도공사	이태원 1 동 72-3, - 72-28	"	"

노 선 별	공 사 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효창공원주변하수도공사 한남 2 동 683 일대하수 도공사 한강로 3 가 63 일대하수 도공사	효창동 산 401 ~ 402 한남 2 동 683-1 ~ 683-18 한강로 3 가 63-13~ 63-171	용산구청 "	83.8-9 "

나. 관제도면 : 생략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
이오니 본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본
공사기간중에 시행토록 하기 바란
다.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38 호

안전사고기록보존규정폐지규정

안전사고 기록보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983.7.13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예규제 439 호

일제지령실운영규정폐지규정

일제지령실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983.7.13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예규제 440 호

대공업무성적평가요강폐지규정

대공업무 성적평가 요강은 이를 폐
지한다.

1983.7.13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83 년 7 월 12 일 자

령제 6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유윤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전출을명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

령제 265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 현 열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강 남 구	지방축산기사보
안 종 현	도 봉 구	강 동 구	" 기원
이 광 구	영등포구	성 북 구	" 기원보
한 영 희	성 북 구	도 봉 구	" "
장 준 형	은 평 구	관 악 구	" "
오 순 철	관 악 구	강 동 구	" "
유 승 우	강 서 구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기원
윤 종 인	시립운동장	수원기전과	지방건축기사보
최 일 영	강 서 구	종 로 구	지방건축기원
유 오 식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박 영 택	"	"	"
김 상 철	"	"	"
임 영 종	"	"	"
정 윤 식	"	"	지방토목기사보
황 의 태	"	"	"
장 석 대	"	강 동 구	"
이 해 완	"	강 서 구	지방토목기원
김 진 수	도시계획국	"	지방토목기사

◎ 1983 년 7 월 13 일자, 령제 268 호

전도봉구주택과
지방행정주사 하 상 회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 환송결정 (소청
위 83-25:83.5.4) 에 따라 83.1.4 자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 1983 년 7 월 14 일자 령제 269 호

하 수 과 황 달 수
지방행정주사보

교통기획과 (지하철안전점검요원) 파견근무
를 명함 (83.7.14-83.8.31)

◎ 1983 년 7 월 13 일자 령제 270 호

전동대문구재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윤 영 원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 환송 결
정 (사건 83-11-306:83.4.9) 에 따라
83.1.4 자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감
봉 3월로 변경 처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